

「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5월 12일, 김성기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성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대통령령 제33312호)의 일부 개정(2023. 3. 2.)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법령 개정안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기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인 [별표 1]을 삭제하고 여비지급 기준으로 대통령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록 개정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개정안은

상위법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된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여
의회 직원의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기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인 [별표 1]을 삭제하고,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를 준용하여

국내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,
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